

청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규정

제	정	1993. 12. 10
3차 개정	2012. 7. 16	규칙 제1297호
4차 개정	2013. 3. 21	규칙 제1308호
5차 개정	2014. 10. 29	규칙 제1359호
6차 개정	2020. 5. 11	규칙 제1516호
7차 개정	2022. 2. 25	규칙 제160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의 자격과 추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 2. 25.>

제2조(자격)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당시 총장 또는 교수인 자로서,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며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고 본교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라야 한다.

제3조(추천) 각 학과장이나 교무처장은 전 조에 의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학과 조교수 이상 교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추천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. 다만, 추천대상자가 총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학생처장 및 학술문화원장의 동의를 받아 추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11.>

제4조(추천위원회) ① 총장은 전조에 의한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예교수추천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명예교수 추천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체된다.

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학생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는 본 대학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 5. 11.>

④ 회의는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
제5조(구비서류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명예교수 추대 적격자로 의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위원장 추천서
2. 교육 및 학술상의 업적조서
3. 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조서

제6조(추대) ① 총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한다.

② 전 항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자는 재 추천할 수 없다.

제7조(복무와 처우)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며, 총장은 명예교수에 대하여 그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2. 2. 25.>

②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5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단위로 연장된다.<개정 2022. 2. 25.>

③ 명예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2. 2. 25.>

④ 명예교수는 도서관 등 대학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명예교수실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.<개정 2022. 2. 25.>

제8조 (추대의 취소) 명예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총장은 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아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.<개정 2022. 2. 25.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 전에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는 이규정에 의하여 추대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2. 7. 16 규칙 제1297호)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3. 21 규칙 제1308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10. 29 규칙 제1359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5. 11. 규칙 제1516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2. 25. 규칙 제1601호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교수의 임용기간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위촉되는 명예교수부터 적용한다.